

M.C. c. 24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대
학생회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진보의 요람
16대 사회대 학생회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특별 학생회칙' 제정을 제안합니다!!!

3월 25일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특별 안건으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대 학생회칙에 성폭력 관련 규약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져왔던 일련의 대학내 성폭력 사례는 우리에게 대학이 결코 사회와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플만큼 명확하게 일깨워주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학우가 같은 학우에게 가한 성적 폭력의 모습들을 보며 이곳, 대학 내에서도 같은 공동체 구성원을 타자로 만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바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비단 근래의 일이 아니라 단지 묻혀져왔을 뿐입니다. 이제 성폭력에 관한 담론은 '사적 영역'이라는 두터운 장막을 뚫고 새어나오기 시작했지요.

처음에 성담론은 마치 사적 영역 속에 갇혀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되면서도, 우리는 과방에서, 라운지에서, 술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어지는 회화화된 성담론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되자, 다시금 그것은 사적 영역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 역할에 개인적 해결을(또는 침묵을) 강요하는 2,3차의 폭력을 거부합니다.

이제 사회적 모순을 공동체가 책임지기 위해 사회대 학생회는 사회대 학생 모두의 자치규약인 사회대 학생회칙에 성폭력 관련 특별 학생회칙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2일 공청회를 열어 전 사회대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청회 및 설문을 통해 수렴된 여러분들의 뜻을 가지고 4월 14, 15일 양일간의 총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는 모순과 싸워가는 자리에 언제나 사회대 학생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차

● 여는글

/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특별 학생회칙” 제정을 제안합니다!

● 총론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특별 학생회칙” 제정을 위하여
-보론/ 자치적 해결을 위하여- 언론정보학과 총회 평가

● 함께 하는 삶, 자치의 공간에서 일구기 위하여

-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 운동에 이르기 까지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 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유형
- 보론/ 신정휴 교수

●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학생회칙”

제정안 상술

●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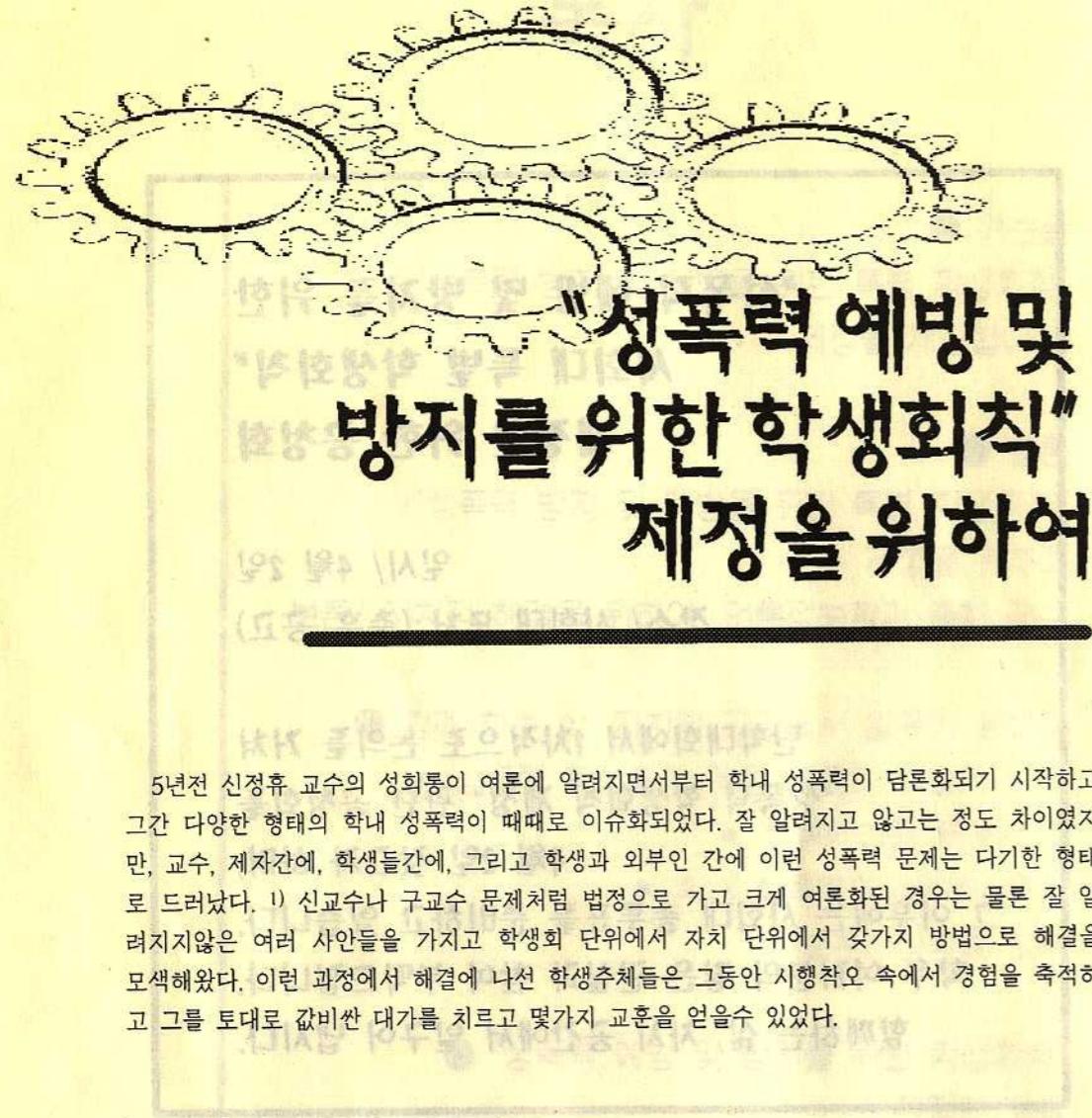
- 하나. 언론정보학과 총회 소집 문건
- 둘. 성폭력 학칙 가안
- 셋. 동아대 학칙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대 특별 학생회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시/ 4월 2일

장소/ 사회대 모처 (추후 공고)

단학대회에서 1차적으로 논의를 거쳐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 관련 공청회를
4월 2일 갖고자 하며,
그 이후에는 사회대 총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맘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삶, 자치 공간에서 일구어 냅시다.



5년전 신정희 교수의 성희롱이 여론에 알려지면서부터 학내 성폭력이 담론화되기 시작하고 그간 다양한 형태의 학내 성폭력이 때때로 이슈화되었다. 잘 알려지고 않고는 정도 차이였지만, 교수, 제자간에, 학생들간에, 그리고 학생과 외부인 간에 이런 성폭력 문제는 다기한 형태로 드러났다. 1) 신교수나 구교수 문제처럼 법정으로 가고 크게 여론화된 경우는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안들을 가지고 학생회 단위에서 자치 단위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해결에 나선 학생주체들은 그동안 시행착오 속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그를 토대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몇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 1) 작년에 여론화된 약대 구교수의 사건은 성적 접근을 거부하자 몇 년을 두고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박사과정한 대한 대학원생의 논문을 통과시키기를 거부함으로 한 사람의 장래까지 막아선 성폭력의 예를 보여주었다. 이 문제는 다행히랄지 구교수의 명예훼손 고소에 무고죄로 판결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더욱이 신교수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써 학교측 대응의 무기준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구교수의 성폭력의 피해자였던 학생이 몇 년동안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논문이 몇해동안 반려되는 상황에서도 개인적 피해와 학업의 포기마저 각오할 때 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상황은 전형적인 성폭력의 2차 폭력이 관악 내에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학생간에는 물리적 성폭력 외에도 고질적으로 불거지는 새터,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의 성차별적 문화가 올해만도 두군데서 문제로 불거져 공론화 과정에 있다.

법, 제도, 관념... 제2의 폭력

첫 번째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금 절실하게 느끼게 된 문제로 기존법상의 성폭력의 개념 정의 및 해결과정의 원칙이 편협하고 다양한 사안들을 포괄하기에 미비하다는 점이었다. 신교수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판단의 기준과 판례가 불완전하며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것으로 파악하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체계상에서 뿐 아니라 본부 층을 포함하여 해결의 파트너가 되는 부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문제점이었다.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점이라는 것과, 그것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민사적 성질의 것일 수 없고 공적 해결의 과정을 밟아야한다는 원칙 및 피해자가 2차적 폭력을 당하는 현 상황을 바꿔내야한다는 점등이 공통된 원칙으로 명시될 필요가 대두되었다.

공적 제재의 대상으로써의 성폭력

성과 성폭력에 대한 온갖 편견이 존재하는 현 사회의 상황을 바꿔나갈수 있는 일보는 '성폭력이란 사회적으로 제재받는 행위이다'라는 점을 모두에게 알려내는 것이라는 점이다. 대개의 가해자들 또한 그릇된 성관념의 희생자인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러한 그릇된 성관념을 깨는 최초의 일보는 이것이 범죄로 규정되는 것이며 공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근래까지 법은 물리적으로 성적 접촉을 강행한 정도가 극심한 경우(특히 성기 삽입여부를 기준으로)만을 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그나마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친고죄인 까닭에 신고율이 2%에 불과한 상황이다. 불과 몇해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또한 적용례가 극히 드문 실정이고 제도적 미비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성폭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무수한 오해와 어차피 알려지지 않을 행위라는 관념을 조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내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사실을 밝힘으로써 자신들이 받을 미심쩍은 시선을 두려워하여 묻어두는 형편이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그릇되었는지조차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고 하물며 어떤 공적 비난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많은 사안을 대하여서, 성폭력이란 성적 불평등에 기반한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벌어지는 폭력이며 공동체가, 그리고 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져야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우리의 자리

대개 공론화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자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문제제기 되었을 경우 학생 측이 문제 해결과정의 일주체로 서는 것은 오히려 부수적인 일이었다. 사안이 터질때마다 학우들은 공대위 참여를 요청해야했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은 청취에서 크게 나을 것이 없었다. 학우들의 삶과 권리에 직결되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당당하게 참여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을 목격한 순간들이었다. 학내 삼주체중 하나인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본부측의 결정과 판단을 지켜보고 따르기만 해야하는 현실은 학생 자치권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두가지를 바로 세워내기 위해서 학내 성폭력을 해결하는 문제는 바로 학생 자치의 영역에서 사고되어야 하며 따라서 성폭력 학칙 제정 시 학생을 하나의 주체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삶/ 자치의 장에서 일궈내기 위하여

지금까지 본부측은 사건 발생시 이를 최소로 축소하고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 무마하여 학교의 명예를 지키는 데만 주력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모순의 존재를 시인하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규약과 참여로써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을 원한다. 이는 항상 사회적 모순에 굴종하지 않고 선도적으로 문제제기해왔던 대학 사회의 비판적 전통과 실천적 역할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 16대 사회대 학생회는 선거시기부터 공동공약으로써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에 나설 것과 더불어 학내 성폭력을 학생 자치적 관점에서 풀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 사회대 학생회는 신교수 퇴진 및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관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운동의 일환으로써 사회대 학생회의 자치규약인 사회대 학생회칙에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특별 학생회칙'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잠정적, 구체적으로 구성원의 발전을 저해하고 배제, 위축시키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학칙과 학생회칙

서울대 학칙은 국립 서울대학교의 규약이며 제정과 개정의 주체는 학장단과 서울대학교 총장이 선임가능한 전문가들이다. 이미 수년간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서울대 학칙'의 제정을 요구해왔음에도 학생들에게는 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본부측의 선처만을 바라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서울대 학칙에 성폭력 관련 규약을 제정하는 문제는 교수, 학생, 교직원의 학내 모든 구성원을 포함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내에서 강제 조항을 만드는데 가능한 방법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반면 학생회칙이란, 학생들을 제, 개정의 주체로 하는 학생들의 자치규약이다. 학생회 구성원 일정수의 발의가 있으면 단대 학생대표자회의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되어 대의원들의 표결로 수정이 가능하다. 이 규약은 비록 강제력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학생들의 손으로 만들고 응용할 수 있으며, 학생 자치의 표상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성폭력 관련 조항을 자치 규약으로 만들어 운용한다고 할 때 서울대 학칙에 넣는 것과 학

생회칙에 넣는 것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회칙이 강제조항을 넣기 힘든 약점을 학칙으로 보완하고 또 학칙의 학생 참여적 운용을 위해서는 학생회칙의 조항이 필수불가결하다.

지금까지 '성폭력 학칙제정'을 중심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금시기 공대위와 더불어 사회대 학생회가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을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입각한 것이다.

첫째, 성폭력 학칙제정 이후 학생들의 자치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성폭력 학칙제정과 그 운용에 교수뿐 아니라 학생, 교직원의 학내 3주체가 모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학생회측의 역할과 운영 원칙을 사전에 학생회칙으로 정하고 자치적 운영 속에서 경험을 쌓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성폭력 학칙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공백을 메꿀 공적 규약이 필요하다. 이미 성폭력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본부측의 외면으로 학칙제정이 지연되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응할 제도와 원칙이 없음으로해서 개인적 차원의 해결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학생회 내부의 자치적 규약이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학우들의 의지를 천명하여 성폭력 학칙제정을 본부측에 촉구하기 위함이다.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은 기간의 담론화 작업을 거쳐 공론을 형성해가고 있다. 본부의 태업으로 지연되는 학칙제정운동에 하나의 전기가 필요한 때다. 불성실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본부측에 성폭력 자치규약의 제정이 소수의 요구가 아닌 학생회 성원 일반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학우 대중의 공통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본부측을 성폭력 학칙제정의 논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넷째,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통념 속에서 우리의 진보적 요구를 하나의 전범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법·제도 및 사회통념은 성폭력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정조의 문제 등 가부장적 소유관계로 사고하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2, 3차의 폭력을 가해왔다. 우리는 학생회칙을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진보적 원칙으로 제정함으로써 타단위에 파급력을 미치고 이후 서울대 성폭력 학칙 및 여타 법·규약에 전범으로 세계하려는 것이다.

자치적 해결을 위하여 -언론정보학과 총회

지난 97년 3월 7일 소집된 언론정보학과의 총회는 과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논의와 자치적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과 총회의 소집은 관악 내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동시에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한다는 원칙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성폭력의 공적인, 그리고 자치적인 해결을 모색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 이었다. 또한 유례없는 일인 까닭에 성폭력을 공동체 자치의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입장에서 교훈을 얻을수 있는 귀중한 표본이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밝히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은 신입생환영회가 이루어지던 무렵에 일어나서 과 통신방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계시판에 불명확한 채로 사건이 오르내리면서 점차 전말이 드러나고 토론실에 의제로 오르면서 공론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일관된 입장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과성원 일부가 자발적으로 성폭력의 사회성과 자치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어 과 학생회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후 총회를 소집하기에 이른다.

총회 소집을 제안한 문건²⁾을 살펴보면 당

시의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다. 문건의 부분을 발췌해 보겠다.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과내 선후배라는 위계질서와 남성의 물리적 우위라는 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행해진 것으로서... 이는 가까운 사람 사이의 허물없는 사귐이나 서로간의 애정과 동의를 바탕으로 한 남녀 사이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공격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준 엄연한 폭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

(1. 이번 사건은 '성폭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중에서)

우리는 여기서 남성, 여성의 권리 관계가 사회적 기제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로 바라보고자 한다. ... 사회적 맥락 즉 '남성은 정력이 세며 여성은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성성의 강요에서 사실상 용납되고 있으며, 아무리 범죄성이 짙은 경우라도 '여성의 순결'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받는다. ...

(2. 이번 사건은 개인적 차원을 떠나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중에서)

우리는 과라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공간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위에

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이 문제를 한 개인의 일탈적 행위로 규정하기에는 사건의 전후 맥락상 그릇된 성관념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언론정보학과도 진보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분명 우리 과도 잘못된 성관념과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에 기반한 사회의 한부분으로서, 왜곡된 성문화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차별, 성폭력이 존재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의 성격을 한 남학우의 인격적 결함으로 규정짓고 그를 비난함으로써 여타의 과 성원들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본 사건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가 되어야만 하며 사건과 그 해결의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교육의 장이 되어야한다.

(4. 총회를 통한 문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중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채택한 등과 비대위는 총회를 소집하고 이 총회에서 가해자는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비대위에서 제안한 징계조항을 모두 받아들이는데 동의하였다. 징계 조항은 공개 사과는 물론, 과방 출입금지, 과 행사 참여금지등 피해자와 불안감을 느끼는 과내 구성원으로부터의 격리를 위한 것과 과내 공식 직함의 포기라는 공적 자격 상실, 그리고 이후 성관련 세미나와 토론회 참가 등의 재교육등 현재 제시되고 있는 거의 모든 조항을 망라한 것이다.

비대위 활동과 총회소집 결과는 그 문제의식과 상징적 의의에 있어 모범이 될만한 것 이었다. 피해자들의 침묵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던 사례들과 불만이 이 과정 속에서 밝은 곳에서 이야기되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한 점,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서 논의되는 전례를 남겼다는 점, 그리고 정족수를 채우고도 웃돈 참석자 수등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

그러나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었던 관계로 아쉬운 점 또한 적지않았다.

사건의 해결까지 한달 이상의 공백이 있어 사건 당사자는 물론 과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

피해자가 원치 않는 범위까지 사건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여 막지 못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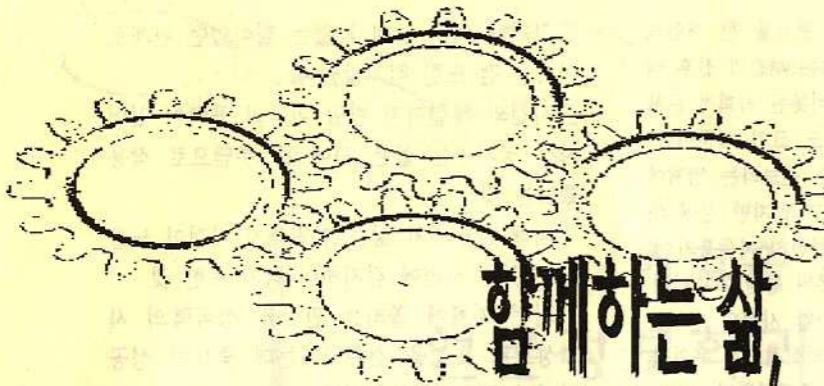
사건 자체에 쏠리는 관심을 '성폭력'의 사회성으로 초점을 전환시키는데 충분히 성공적이라 할수 없었던 점등.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면들은 하나의 경험으로 남았다.

부정적인 면들의 많은 부분은 초기에 해결의 주체와 방향설정이 오래도록 서지않았던 데서 비롯하였다. 또한 주체들의 경험 부족도 큰 원인이었다. 학생회칙의 성폭력 관련 규약과 단대 단위의 담당 기구를 갖추어 제도적이고 상시적으로 성폭력 문제를 다루게 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었다.

또한 피해자 보호시의 노하우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이런 과정들을 단절적으로 남긴다는 것은 손실이 될 것이다. 자치적이고 공적인 모색의 과정이 앞으로 학내 성폭력을 해결하는데 전범으로써 남기기 위하여 그 공과를 바로 평가하고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삶, 자치의 공간에서 일구기 위하여

●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학칙제정”
운동에 이르기까지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 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유형에 관하여

보론/ 신정휴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학생회칙” 제정 운동에 이르기까지

1.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에 관하여

학칙 제정의 효용

첫째로 민첩한 대처로 사건 해결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수 있다는 점이다. 여론화되고 법에 호소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할 여하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히 순교자적 인내를 감내할 수 밖에 없다. 학칙이 자치규약의 형태로 적용될때는 이러한 2차적 고통을 줄일수 있으며 시간적, 비용적으로 소모성을 줄일수 있다. 자치규약은 상위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을 보는데 5년이나 걸린 신교수 사건에서 볼수 있는 현재의 단점을 상당히 줄여낼 수 있다. 또한 즉각적인 가해자의 처벌과 재교육등이 이루어지므로 피해자는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만일 가해자가 학칙에 따른 결정에 불복할 경우라도 실익이 있다. 이제까지는 피해자가 직접 법에 호소하여 항변하여야하는 부담을 지지만, 학칙이 제정될 경우 가해자가 결정에 불복하여 상위법에 호소한다면 그 부담은 가해자가 일차적으로 지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실익은 물론 예방에 있다. 성폭력이 ‘범죄’로서 규정되는 사회적 문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기존법의 통념을 넘어선 학칙 운용을 통해 대사회적 발언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기존법과 통념은 여전히 성폭력을 단지 ‘난폭한 성관계’로 인식하는 보수성을 띠고 있으며, 순결, 정조 이데올로기와 성차별적 인식으로 오염되어 있다. 이런 법은 사회관계의 반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사회관계를 재생산하는 주요한 메카니즘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판례변경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 성폭력에 관한 학칙 제정은 대학이 지니는 대사회적 지도력 속에서 하나의 전범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법에 호소하는 것 외로 제도적 해결이 전무한 상황에서 다른 사회단위에 차지적 해결의 모델을 제공하고, 서옥력이 정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의 문제임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학칙제정은 상위법과 사회적 통념을 바꾸어내는 대

종적 의식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다.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내에서 학칙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소위 '우조교 사건'으로 불리는 신정휴 교수의 성희롱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폭력이라는 것이 아직 담론화되기 전이었던 그때 즉자적으로 대책위가 꾸려져 총학생회 차원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였으나 그 과정의 지난한과 지지부진함, 그리고 피해자가 감수해야했던 엄청난 희생에서 기존법과 다른 어떤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흐름은 언론의 가십성 관심이 식어버리고 법정 공방이 2심 패소로 장기화되면서 단절되고 만다.

다시금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의 실물적 흐름이 생겨난 것은 97년 약대 구교수 사건이 이슈화되고 공대위가 꾸려지면서부터 였다. 이와 시기를 같이 하여 부산 동아대, 국민대 등에서도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터져나왔고, 여러 대학에서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함께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동아대에서 학칙이 제정되었고 구교수 공대위에서 처음으로 학칙 가안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그후 구교수 공대위가 해체된 상황에서 학칙 제정의 공식적 논의의 경로는 부재했다.

그해 관악여성모임연대(이하 여모)에서는 한편으로는 다른 대학과의 연대회의에 지속적으로 결합하여 보다 정식화된 학칙 가안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칙 제정운동의 담론화에 매진하여 97년 학생회 선거 시기 자료집을 발간하고 각 선거본부와 정치조직에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제안하였다. 이 시기 4개 중앙 선본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전 선본의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사회대 3개 선본 역시 여모의 안을 자료집에 실었고 공동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였다.

선거시기의 동의에 기반하여 이제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은 총학생회와 각 단대 학생회가 여모와 함께 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공대위를 꾸리는데 있어 순탄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재 신교수 퇴진운동과 학생회칙에 성폭력 관련 규약을 제정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내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성폭력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 언제나 하나의 센세이셔널한 사건

이 터질때면 이슈화가 되었다가 그 사건이 대중의 관심에서 물려서면 그에 대한 논의도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본부의 비적극적인 태도 속에서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지금에 있어, 가장 필요 한 것은 변화없는 상황속에 흐름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지속적이고 소모적이지 않은 운동 형태를 창출해내는 것으로 보인다.

신교수 퇴진 운동이 이슈 파이팅으로 본부에 접근해가기는 수월하지만 이슈파이팅은 지속적이기 힘들다.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은 학생사회 내에서 상시적으로 성폭력 문제의 해결 과정을 해나가는 운동의 제도화이기도 하다. 이런 자치적 운용속에서 동력을 이어나가고 경험을 풍부화하는 것이 현재 학칙 제정운동을 해나감에 있어, 그리고 성폭력의 문제를 학내에서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2. 지금 관악의 다른 단위들은?

공대

공대는 집단적인 자리에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대 여성위원회(학생회 외부기구임)에서 제안하여 공대 운영위원회의 통과로 새내기 새로배움터의 내부규약으로서 '성폭력 내규'를 만들고 신고함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 성과로 예년에 비해 그러한 사례, 즉 음란 가요를 집단적으로 부른다던가 새터 공연에서 성차별적 연극을 한다던가하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음란 가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그후 운영위원회와 공대 여성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공적 해결과정을 밟았다.

공대에서는 새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른 단대와 함께 일상 학교 생활에 필요한 내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자연대

자연대에서는 '여성권 확보와 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자연대 여성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작년 단대 학생회 선거에서 자연대에서는 女聲이 3개 선거운동 본부에 성폭력 학칙 제정을 각 선본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학칙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겨울방학동안 내부적으로 새로이 개강하는 1학기 동안 좀더 대

중적으로 펼쳐낸 활동들을 고민하던 중 개강직전 있었던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성폭력 촌극' 사건이 발생하였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장기자랑 시간에 공연되었던 촌극중에서 한 남성이 페니스를 과시하며,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이 들어갔던 것이다. 그 촌극은 일부 학우들의 거친 항의로 중단되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흐려지고 과간의 대립과 공연중단에 대한 다른 논쟁들이 있었다. 女聲은 현재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여성 배제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문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현실에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그날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자보작업에 들어가 문제의 본질이 성폭력임을 밝히고, 공연 단위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자연대 학생회에는 자연대 운영위원과 女聲 1인이 참가하는 성폭력 학칙제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에게 반/과 총회, 교양학교 등의 자리에서 이 문제, 혹은 성폭력 학칙제정에 대해 대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개강전 공연단위는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위원회 경우, 단순히 학칙 제정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적 문화 그 자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담보하기 위하여 '여성권 확보와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자연대 여성위원회'(이하 자연대 여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현재 자연대 9개 단위중 5개 단위의 책임자들이 결합하고 있으며, 女聲과 자연대 학생회에서 같이 결합해 있다.

자연대 여위의 위상은 자연대 학생회의 특별 기구이다. 그리고 여위의 사업으로써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1학기 자연대 학생대표자 회의에서 그 기조와 활동 계획을 인준받았다. 그리고 1학기와 방학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모아 2학기 자학대회에서 일단 학생회칙에 성폭력 내규를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사범대, 인문대등에서도 역시 여성단위의 주체들을 중심으로 혹은 학생회에서 이 문제에 동의하고 있으나 주체의 문제로, 혹은 그 단위의 역량상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단위들에서는 타단위의 활동을 주목하면서 그 활동을 전범으로 삼아 자 단위의 운동을 일구어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총학생회에서는 현재 '성정치위원회'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관악단위의 집회와 퍼포먼스, 그리고 팜플렛의 발행 등의 활동으로 각 단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악차원에서의 대중적 활동들을 기획하며, 본부측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적 활동들을 펼쳐내고 있다.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강간 뿐 아니라 추행,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아내강간, 강도 강간 등 성은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실제 양상

성폭력의 한 형태인 강간은 다른 형태의 범죄와는 달리 가해자에게 비난이 쏟아지기보다는 피해자가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된다. "남자가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여자 행실이 오죽했으면 그런 일을 당했을까?" 하는 식으로 강간이 정당화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합리화하는 잘못된 통념 - 강간은 남성의 본능적인 성충동과 그러한 성충돌을 여성의 부주의, 유혹, 무저항 등이 자극함으로써 발생한다는 통념- 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1975년 2774건이던 강간범죄는 1980년 이래 매년 5000여 건 이상 보고되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89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범죄백서'에 의하면 신고율은 실제 바생건수의 2.2%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를 근거로 계산해 보면 한 해 25만 건, 하루 685건, 한 시간에 29건, 2 분마다 1건의 강간이 발생하는 샘이다.

이렇게 감추어진 성폭력은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성폭력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그에 대한 반박 및 실제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잘못된 통념 1 :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잘못된 통념 2 : 간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바로 이러한 통념 때문에 여성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시키면서 깊은 자책감이나 수치감, 절망감에 빠진다. 간간은 성관계가 아니다. 단지 가해

자의 성이 무기가 되어 피해자의 성을 침해한 폭력 행위일 따름이다. 따라서 강간 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으로 사고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명백히 폭력을 당한 것이다.

잘못된 통념 3 : 나에세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2%의 성폭력만이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폭력은 특정 연령, 계층 혹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 종교, 직업, 교육 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에 관계없이 많은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잘못된 통념 4 : 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사례를 보면 70%이상이 우발적인 범죄이기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잘못된 통념 5 :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이다.

성폭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그리고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 성폭행이 전체 성폭행의 30%가 넘으며 여름철에만 오히려 성폭행이 덜 일어난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언동에 성폭력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를 정당화시키려 하는 것은 비난의 화살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논리이다.

잘못된 통념 6 : 대부분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사례를 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70% 이상을 차지 한다. 이러한 통념 역시 성폭력을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우발적인 범죄로 보는 인식이 전재된 것이다.

잘못된 통념 7 :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대부분의 사해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직업이나 계층적 특수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도리어 성실한 직업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잘못된 통념 8 :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가해자는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흥기로 위협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하기보다 무력해지기 쉽다.

학내 성폭력 실태와 유형에 관하여

1. 학내 성폭력의 실태

지난해 10월 6일자 대학신문에는 대학신문과 관악 여성모임연대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학내 성의식과 성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성희롱으로 나누어 성폭력 사례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매일	자주	가끔씩	없다
언어적	6.8%	41.6%	45.1%	6.5%
비언어적	4.2%	23.6%	46.3%	25.9%
성희롱	4.2%	25.5%	48.7%	21.6%

이밖에 강제 애무나 키스를 당한적이 있다는 응답은 9.1%, 강간미수는 1.5%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에서 성적 괴롭힘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서 남성응답자의 71.4%, 여성응답자의 87.4%가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대처 방법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잘못을 지적한다'가 각 유형별로 30~40%에 달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지만, '주위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기분을 풀다'와 '그냥 넘어간다'의 문항을 합하면 50~60%에 달해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무대응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냥 넘어간다는 답변을 한 경우 그 이유는 '항의해봤자 서로 불편해지기만 할뿐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때문에'라는 답변이 32.7%, '불쾌하지만 오히려 반감을 살 것 같아서'가 23.9%,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니므로 무시하는 것이 편하기때문에'가 20.4%인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이 대사회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는 일이라는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³⁾

3)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 신고율이 2%라는데서 보는 바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수도 있을 것이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폭력 사례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의 반복속에서, 혹은 문제제기 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가 곤란해지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에게 학습된 무기력이 널리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또다시 '목인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범죄로서의 성폭력을 조장하게 된다.

또한 남성의 79.1%, 여성의 92.5%가 성폭력 관련 학칙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해 대다수의 학우들이 성폭력 해결의 제도화에 동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학칙제정이 필요치 않다고 답변한 학생들도 가장 큰 이유로 '학칙이 제정되면 학칙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 오히려 성폭력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해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내 성폭력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2. 학내 성폭력 유형

학내 성폭력의 유형과 사례는 그 대상과 드러나는 양태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교수-학생 간, 학생 간, 학생과 외부인 간으로 나뉜다.

그리고 양태에 따르면 언어적, 비언어적,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대상에 따라 나누고 사례별로 양태를 살피는 방식으로 보겠다.

2-1/ 교수-학생간

교수와 학생간 성폭력의 경우는 비교적 오랜 시일에 걸쳐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사제관계라는 위계질서가 가하는 억압과 실질적 학업수행에서 당할 불이익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약대 구교수의 사례

화학과 신정희 교수의 사례는 보론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작년에 이슈화된 약대 구교수의 사례를 들겠다. 구교수는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접근하였다. 성적 농담을 던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도를 빙자하여 사석을 마련하고 학습과 관련된 여행에서 한방에서 자자는 등 정도가 심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거부하자, '너같이 정없는 것에게 학위를 줄 것 같으냐'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이 사실을 문제제기한 학생은 계속된 거부로 인해 몇 년째 지도교수인 구교수가 논문을 통과시키지 않아 학업 수행과 진로에 있어 큰 손해를 보았다. 이에 학생이 문제제기하자 구교수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그 학생을 고소하였으나 알려진 바와 같이 법정에서 오히려 무고죄로 판결받았다. 이에 구교수는 현재 직위해제당한 상황이다. 법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구교수는 피해학생과 부모에게 심한 폭언을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의 사례

강의 시간에 여학생들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특히 신체부위가 상당정도 노출되는 옷차림에 대해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 강의를 하지' 등의 발언을 하고, 여학생이 연구실에 들을 경우 사제지간임을 내세워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함.

첫강의에서 '난 여학생들이 앞자리에서 예쁘게 웃어주면 학점이 잘 나간다'는 등의 말을 함 사이가 좋지 않은 여학생에게 '너같이 못생긴 애들만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폭언을 함

2-2 / 학생-학생간

학생들간에는 가장 다양한 유형이 알려져 있는데 교수의 경우와 같은 확고한 학업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라, 일상 생활에 있어 '분위기'적으로, 즉 문화적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때문에 문제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물리적 폭력

비어있는 동아리방, 엠티때, 혹은 자취방이나 하숙방에서, 술자리등에서 많은 사례가 수집되었다.

- 동아리 방 - 동아리에서 밤샘 작업을 하던 중 밀폐된 곳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다. 일을 펑계로 뒤에서 포옹하는 등의 시도를 하다가 몇 일간의 작업으로 지친 상태에서 피해학우가 침낭을 덮고 자려하자 옆에 누워 계속 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학우는 밀폐된 공간이라 강하게 항의하면 오히려 더큰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당시에는 크게 저항하지 못했다. 이후 피해학우가 기분나빠하자 가해자는 오히려 선배라는 점을 내세워 동아리 일을 하는데 있어 피해학우를 비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가하였다.
- 엠티 - 만취한 상태에서 깨어보니 피해학우는 자신이 남자 동기에게 안겨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서로 취해 우연이려니 했으나 그 후 다른 여선배에 의해 자신이 쥐한 사이 그 동기가 자신을 고의적으로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잊어버리고 넘어가려 하였으나 가해자는 이후 다른 후배에게 '00과 나는 끌어안고 자도 아무 일없는 친한 사이다'는 등의 말을 했음을 알고 더욱 분노했다.
- 자취 또는 하숙집의 경우 - 과나 동아리 사람들이 서로의 집에서 자는 것이 일상적인 분위기임을 악용해 만취했음을 빙자하여 늦은 밤에 재워달라고 한다던가 한잔 더하자고 들어가 강제적으로 성적 접근을 시도함. 대부분 공동 생활인 자취나 하숙방에서 여학생은 큰 소리를 낼 경우 밤에 남자를 방에 들인 상황을 오히려 비난받을까 두려워 당황하게 된다는 약점을 이용.
- 술자리 - 동문 신입생 환영회에서 취한 후배에게 바람을 쏘인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나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다음 가슴을 더듬는 등의 행동을 함. 피해 학생은 애초에 그다지 취한 상태도 아니었음에도 선배가 이끄는데 거부하는 것이 무례하게 비칠까 동행하였으나 선배의 행동에 놀라 급히 술자리로 돌아온 후 집으로 돌아감. 취해 상에 기대엎드린 후 배를 깨우는 척하며 가슴을 만지는 것을 다른 여선배가 목격함. 만취한 상태를 빙자하여 부축해달라고 한 후 후배의 팔을 끌어안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키스를 함. 다음날 '어제는 필름이 끊겨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오히려 물어와 후배는 침묵하고 맙.

이런 상황들은 대개 그런 자리들이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또 과나 동아리가 서로 믿는 분위기임을 악용하는 것으로, 여학생들이 그런 자리를 기피하게 함으로 대학생활의 공간에서 배제시킨다는 점이 매우 심각하다 하겠다. 이때 여학우들이 그런 자리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려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가해자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하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언어적 폭력

- 평소 과 술자리에 잘 나가지 않았던 한 여학생은 '그래서 여학생들이 많으면 과가 안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집에서의 불편을 감수하고 늦게까지 남아있자 '네가 내 친동생이라면 절대 이러지 못하게 할거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 여학생이 혼자인 상황에서 과방에서 한 남학생이 동기에게 '요새 청량리에서 하룻밤에 얼마나 하느냐는 등 당혹스러운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다. 자리를 피하자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 한 선배가 미니스커트를 입고온 후배에게 듣기 민망할 만큼 계속적으로 '다리가 예쁘다'느니 '매일 그렇게 입으면 과방 분위기가 피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그만 좀 하시라고 하자, '알았어 알았어 너도 한 번 입고 오면 봐줄게. 나이먹어서 질투하지 좀 마라'는 말을 함.

비언어적, 문화적 폭력

- 거친 숨소리 등의 음란 전화가 계속적으로 걸려왔다. 추정되는 사람이 있었으나 본인은 부인함.
- 강의 자료를 빙자하여 노골적으로 음화를 펼쳐놓고 피해학생이 당황하게 함
- 어떤 과에서 전통적(?)으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새터 등의 자리에서 남학생 한명을 가운데 세워놓고 여학생들을 빙둘러서 어깨동무를 하게 한다음 노래에 맞춰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케 함. 노래가 끝나면 남학생이 들고 있던 우유를 하늘로 뿌리게 한다.
- 새터나 환영회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성기를 상징하는 손동작에 맞춰 음란가요를 부름
- 새터 공연시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이불뒤로 가서 옷을 바깥으로 던지며 교성을 지르는 등 강간을 나타내는 장면을 보여줌.

2-3 / 서울대학생-외부인 간

이대 엽서 사건

수영복 차림의 여자사진에 ' hey, pretty girl, 미팅한번 안할래?' '네 좋아요 오빠'라는 말풍선을 만들어 이대 모과와 다른 여대에 미팅제안 엽서를 띄움. 이대측에서 강력히 항의하자 '매년 선배들이 했던 대로 해왔을 뿐이다'라고 해, 이런 일이 단발적인 일이 아님을 드러내었다. 이 사건은 통신망 등을 통해 학교간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서울대 중도 사건

중도에서 우리학교 여학생이 피곤해 엎드려 있는 사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낌. 바로 일어나 들러보자 주변에는 한자리 건너 떨어진 곳에 남학생의 소행으로 보임. 한자리가 떨어져 있었으므로 우연이었다고 볼수 없었다. 주위의 도움을 청해 붙잡아 말을 들어보니 '다른 학교 학생인데 서울대에 대한 반발감으로 그래봤다고 함. 이 사건은 사회적 우열관계에 대한 반발감을 그 집단에 속한 여성의 희롱함으로써 해소하려 했다는 데서 성폭력의 사회성을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이런 여러 양태의 성폭력은 모두 학내 구성원의 한 부위를 그 집단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성폭력의 사례들에서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발견해낼 수 있다.

▶▶▶ 신정희 교수에 관하여

신교수 사건은 일명 '우조교 사건'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적 괴롭힘(성희롱)에 관한 논의를 대대적으로 불러왔던 사건이다.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가 더욱 이 사건에 언론의 관심을 끄는데 한 몫을 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만큼 오랫동안 법정사음을 했던 사건이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타고, 이 사건은 오랫동안 '우조교 사건'으로 불렸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곱지않은 관심을 가지는 성폭력 사건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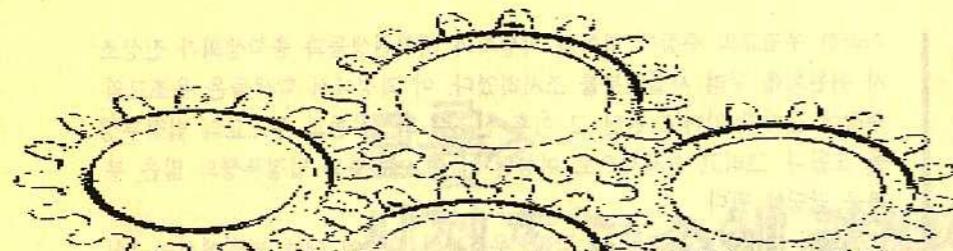
이 사건은 93년 우조교가 학생들에게 호소하는 글을 붙이면서 학생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다. 우조교는 화학과의 유급조교 - 대학원생이 아니라 과에서 실험 등의 조교로 따로 채용하는 조교 - 였으며 92년 2월부터 1년을 근무하였다. 그녀는 93년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으나, 재임용 탈락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고, 재임용 탈락의 이유는 자신이 신교수의 성적인 접근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전임자들을 찾아보고 피해자가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거의 같은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성적 괴롭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험기기의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20-30회 정도 뒤에서 포옹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손을 잡거나, 의도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접촉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또,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실험실 사람들 모르게 자신과 단둘이서만 넥타이 매고 가는 곳에서 입방식을 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심부름 등의 기타 명목으로 우조교를 부른 다음 위아래로 훑어보며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같이 관악산에 산책하기를 제안하면서 신교수의 연구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등의 제의를 하였고, 그에 대해 거절하자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붉힌 일이 있다고 한다. 우조교의 전임자는 더욱 노골적인 성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우조교의 전임자들은 모두 여성되었고, 후임자 역시 여성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교수의 성적 괴롭힘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우조교의 주장에 화학과 학생회와 대학원생들과 총학생회가 진상조사 위원회를 꾸려 사실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조교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 그 이후 신교수 퇴진운동과 우조교의 법정투쟁을 도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성단체들이 여론화와 법정투쟁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 왔다.

그동안의 법정투쟁은 다음과 같다. 우조교의 고소에 대해 법원에서는 1심, 상고심, 항소심의 3심의 과정을 거쳤다. 94년 4월 18일에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신교수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여 신교수가 우조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체 접촉행위, 심부름으로 연구실에 들어오는 우조교를 아래위로 훑어보는 등의 무형적인 폭력들, 결정적으로는 산책 제의에 대한 거절로 인해서 재임용 거부라는 보복적 행위 사실등이 성희롱의 근거로서 인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95년 7월 25일에 있었던 2심은 이런 1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엎었다. '성적 괴롭힘은 그 성적인 성격이 노골적이고 성적인 의도가 분명히 간취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개인적으로 분노, 슬픔, 울화, 놀람을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것을 넘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등의 무리한 요건 -성적 괴롭힘의 범주를 매우 좁게 보는 - 을 들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우조교가 엔엠알 기기조작을 할 때 신교수가 성적, 신체적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보고 또 신교수가 산책 제의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신교수의 성희롱 범죄 모두를 일상생활의 해프닝정도로 보는 식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려졌고, 2년 반을 기다려 98년 2월 10일에 3심에서 다시 신교수가 우조교를 성희롱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직장내에서 교수와 제자라는 권력관계에 의해 일어난 성희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몇번의 판결 번복이 있은 후 겨우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3심이 승소한 부분은 신교수의 성희롱 부분만이고 신교수가 우조교에 대한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아 우조교가 조교재임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복해고가 아니라 우조교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판결을 여전히 고수했다. 또한 신교수 외에 당시 총장과 법무부장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의 상고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 이런 식의 미흡한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 3심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성희롱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인격권이 침해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장내에서 권력 관계에 의해 발생되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안타까움을 남긴 것이다. 그런데 이런 3심의 판결에 대해 비평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신교수가 지금도 대학원 강의를 하며 서울대의 교수로서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대 학생회칙" 제정안 상술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자치적으로 성폭력을 방지하고 규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라 함은 한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과 관련하여 문화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물리적,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포함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구 및 성차별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의 개념을 이와같은 원칙으로써 세우는 이유는 앞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성폭력이란 이런 저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고 겪은 폭력과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견지하면서 개별 사안에 대하여 성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조사-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해야한다.

제 3조(대상) 사회대 학생회 구성원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가해자, 피해자 쌍방 이 해당될 경우는 물론 어느 일방이 해당될 경우도 포함한다.

가해자 일방이 속할 경우 이 학칙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피해자 일방이 속할 경우, 예를 들어 사회대 학생이 교수에 의해, 타 단대 학생, 타 대학 학생에게 피해를 당하였다고 할 경우, 조사-징계위원회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본부측, 타 단대 학생회측, 타 대학측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작게는 사과를 받아내는 수위에서 법정으로 문제가 비화될 경우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해결해나가는 전과정에 적극 나선다. 특히 이 조항은 성폭력 학칙 제정에 있어 문제 해결의 삼주체 중 하나로서 학생단위를 세우고자 하는 자치적 요구에 대응하여 그 학생주체를 학생회가 말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 4조(피해자의 보호)

1. 피해자의 보호가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신고 접수서부터 사건의 조사 및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조사-징계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3.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동의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응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피해자는 자신이 속한 과 혹은 동아리 학생회 안에서 조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피해자 우선의 원칙은 이 모든 규정을 관통하는 원리이다. 사건의 공론화와 징계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진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자신이 속한 과나 동아리 학생회 성원중 조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사람 일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조(신고인)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 본인 이외에도 그런 장면을 목격한 주변인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공감할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기존 법률의 경우 성폭력 문제는 친고죄이다. 이는 성폭력을 정조의 상실, 즉 가부장적 소유관계에서의 개인적 차원으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성폭력의 신고는 기존 법체계에서 2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신고율을 높이고 성폭력의 사회적 성격에 문제제기하는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신고자는 피해 당사자 및 목격한 자로 한다. 이때 조사-징계위가 구성되어야 하나, 제 4조 피해자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가 사실을 부인하거나 공론화 또는 징계를 원치 않을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강행할 수는 없다.

제 6조(신고 방법과 신고기구) 신고자는 본인 스스로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서면
이나 직접 방문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과학생회, 동아리 학생회, 단대 학생회
및 학내 여성관련 단체에 신고한다. 1차 신고접수자는 반드시 조사징계위원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자신이 속한 단위의 학생회장 및 집행부부장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물론 단대 학생회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 및 여성관련 단체에 신고하는 방법도 무방하다. 신고를 접수한 자는 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은폐해서는 안된다. 신고가 있으면 반드시 조사-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야하고 동 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의 해당여부의 결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능을 해야한다.

제 7 조

[항] [조사장계위원회 구성] 사건 당사자 쌍방이 속한 과학생회 혹은 동아리와 단체 학생회 단체자 및 관계 단위 여성단체에서 두수로 구성한다.

2학기 조사·정책위원회의 역할

- 제 2조에 입각하여 신고 접수된 사건의 성폭력 해당여부 판단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피해자 일방만이 사회대 학생회 구성원일 경우,加害자가 속한 단위와 협의, 증자에 있어 피해자 대리
 - 가해자 징계 회부 및 재교육
 - 피해자 보호

제 8조(징계과정 및 내용) 강제적 징계사항은 사건 공개 및 공개 사과문 게시의 명

예형으로 한다. 기타 징계사항은 상황에 맞게 조사·징계위원회가 권고사항을 제시하면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조사·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경미한 사안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징계를 유예할 수 있다. 경고장 발송 후 둘 가하자에 의해 사건이 재발되면 징계에 임한다.

권고 정계사학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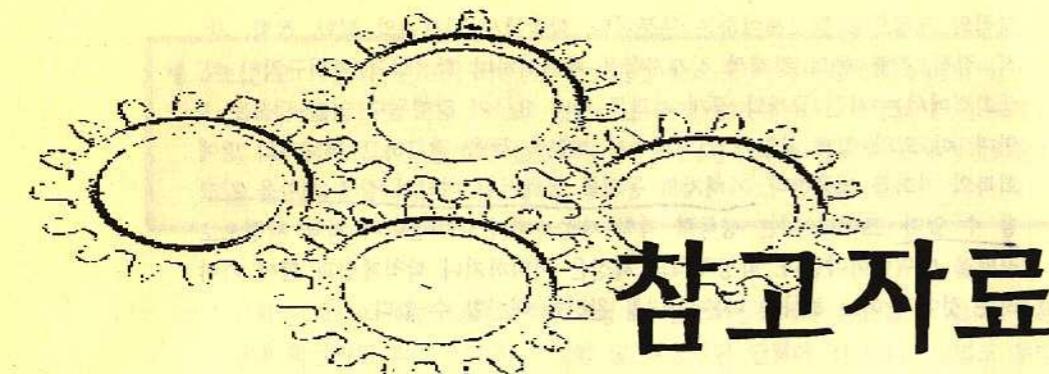
1.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듣는 제교육의 방법
 2. 외부 여성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하는 방법
 3.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방법

③ 사실상 학생회칙이 강제성을 띠는 징계사항을 집행할 수는 없다. 이는 성폭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다.

학칙의 제정으로 담보해야하는 부분이다. 학칙에서 가해자의 퇴학, 정학, 사직, 정직, 감봉 등의 강제적 징계사항을 세워야하며 학생회의 자치규약인 학생회칙에서는 사건 공개와 공개 사과문 게시 요구가 강행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의 징계 사항은 가해자에게 재교육 등을 권고하고 가해자의 명예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해자의 동의를 통해서만 여타의 징계 사항을 강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학칙 제정까지의 미비점이며 학칙 제정으로 공백을 메꿔넣어야한다. 학생회칙의 제정은 어디까지나 학칙제정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

제 9조(단대 내 성폭력 담당 기구의 설치) 사회대 학생회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학생회 내 이의 책임자를 둘다.

현재 이를 담당할 사회대[※] 학생회 내 기구는 여학생 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이후 학생회의 역량을 고려해 '전담'으로 하지 않고 '담당'으로 하였다. 마땅한 기구를 학생회내 둘수 없을 경우 사무국장이나 학생회장이 책임자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급적 경험있는 인자를 세우는 것이 옳은 것은 물론이다.



참고자료

○ 언론정보학과 총회 소집 문건

○ 성폭력 학칙 가안

○ 동아대 학칙

언론정보학과 총회 소집 문건

/ 이 사건을 바라보는 특위의 입장

1. 이번 사건은 '성폭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과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일방적이고 왜곡된 애정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이번 사건을 엄연한 '성폭력'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폭력은 단지 물리적 힘에 의한 신체적 손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 공포, 불쾌감 등 정신적 피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에 따른 '성폭력'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이란,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행해진, 성(性)과 관련하여 행사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폭력의 극단적인 경우인 강간에서부터 정신적인 괴로움을 주는 언어, 몸짓, 표정, 시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새로 쓰는 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에서 인용)

과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행한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과내 선·후배라는 위계질서와 남성의 물리적 우위라는 위압적 분위기에서 갑작스럽게 행해진 것으로써, 비록 극단적 경우인 강간으로 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공포와 불쾌감을 심어주고,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엄연한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까운 사람 사이의 허물없는 사귐이나 서로간의 애정과 동의를 바탕으로 한 남녀 사이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공격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을 준 엄연한 폭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번 사건은 개인적 차원을 떠나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남성, 여성의 권력 관계가 사회적 기재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로 바라보고자 한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 혹은 sexuality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사회적인 성성(gender) 즉 남성성/여성성의 규정으로 이어지면서 "차이의 차별로의 이행"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리고 '공격적, 주도적'이라는 남성성과 '수동적, 순종적'이라는 여성성의 사회적 강요는 자연스럽게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남성의 우위와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귀결된다.

차이가 차별을 낳았다는 것은 물론 필연적인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차별은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남성성/여성성을 강요함으로써 나타난, 사회적 합의에 의한 문제임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요가 주로 기존의 사회·문화적 조건들 -남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사적·공적 교육, 그리고 여러 매체들, 심지어는 정치적인 정책까지- 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사회적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남성, 여성의 억압구조는 또 다시 '신체'에 대한 권력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동의된(?) 성성과 기재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면에서 '신체'에 대한 성적 억압 역시 사회적 문제이다. 현 사회의 여성들은 diet를 해야하고, 정숙해야 하며, 성관계를 맷음에 있어서 수동적이어야 하고, 정숙하지 못한 결과라는 원치않는 임신이나 낙태 혹은 강간은 모

두 여성의 책임이다. -물론 남성 역시 '성욕의 신화'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정력'과 '페니스의 크기'에 집착해야 하고 (또 '아버지'의 신드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가부장제 사회에서 강한 남성으로 살기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폭력, 강간 등은 이러한 사회적 모순의 한 단면이며, 이러한 사회적 맥락 즉 '남성은 정력이 세며 여성은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성성의 강요에서 사실상 용납되고 있으며, 아무리 범죄성이 짙은 경우라도 '여성의 순결'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받는다.

3.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당당한 '인격체'로

앞서 언급한 남성, 여성에 대한 성성 강요나 남성/여성의 성적 억압관계는 여성을 불거리 혹은 정복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남녀가 권력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는 잘못된 성문화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이 성적 대상화로 전락하는가 하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되고, 오히려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지나치게 항의하는 여성에게 잘못이 있다는식의 반응도 허다하다. 그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그런 성적 희롱과 폭력에 대해 엄청난 불쾌감과 모욕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요구된다.

우리가 여성을 대등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하고자 한다면 우선 여성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4. 총회를 통한 문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과라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공간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이 문제를 한 개인의 일탈적 행위로 규정하기에는 사건의 전후 맥락상 그릇된 성관념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언론 정보학과도 진보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분명 우리 과도 잘못된 성관념과 남성우월주의적인 사고에 기반한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왜곡된 성문화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차별·성폭력이 존재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의 성격을 한 남학우만의 인격적 결함으로 규정짓고, 그를 비난함으로써 여타의 과 성원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본 사건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가 되어야 하며, 사건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 척 과정으로서 우리는 총회를 제안한다. 사건을 과 성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그 해결의 전 과정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또한 총회는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본 사건이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라는 판단에 기반하여 특위는 과차원에서의 처벌을 제안한다. 총회는 사건의 공개로부터 처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과 성원 전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운여위원회라는 공식기구에서 처벌을 결정하고 이를 학우들에게 통보함으로써 사건 당사자에 대한 처벌에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을 막고 이후 과 전체

로 성담론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처벌이 총회에서 의결되는 것은 또한 과에서 공식적 처벌에 대한 선례가 없었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보다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처벌이 일방적으로 혹은 조급하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신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합리적인 표본이 되고자 한다.

성폭력 학칙 가안

총칙

제 1조 (목적) 대학은 대학구성원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근절하고, 개인의 직무나 학업 수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위협적, 적대적 또는 공격적인 작업, 학습,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성적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한 속에서 교수진과 직원, 학생을 포함한 전 대학사회 구성인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균로분위기에서 작업 및 학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규정, 규제, 해결하기 위한 구제 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는 성을 매개로 대학구성원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신체적인) 행위가 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개인의 업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근무(생활, 교육)환경을 형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환경형 성폭력의 조향에 의거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규정한다.

당해 조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대학구성원들이 타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적대적인지 악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상대가 느낄 감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근거

- 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발언일때
- ②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행위이거나 발언일때
- ③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개인의 학업평가, 고용, 인사 또는 다른 학교 일에 대한 참여의 조건에 영향을 끼칠때
- ④ 환경형 성폭력일 때
 -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이 개인의 능력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는 또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학업, 근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할 때
 - ;차별적 행동의 빈도와 정도, 공격적인 언동이라든가 혹은 고용인의 작업에 대한 불합리한 참견들로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하여 타인에게 상처주었을 때
- ⑤ 행위 또는 발언이 지속, 반복될 때

제 3조 (대상) 본교 구성원으로서 교수는 외부 전임강사 이상을, 학생은 본교 재학생을, 교직원은 기성회직 이상을 포함하며, 위임교수 및 교환학생도 대상에 적용된다. 피해자, 가해자 중 일방이라도 이에 포함될 경우에도 본 학칙은 적용된다.

제 4조 (피해자 보호)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및 소속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② 성폭력 사건 징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 추궁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③ 사건 징계과정은 물론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징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조 (신고인)

- ① 사건에 대한 신고는 피해 당자자나 본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선정한 대리인 또는 피해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 9조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 ② 신고인 보호는 제 4조의 피해자 보호에 근거한다.

제 6조 (성폭력 상담실 설치)

- ① 학교는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실장은 상담 전문가, 또는 성폭력 관련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 ② 재정문제에 있어서 학교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상담원 교체나 채용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7조 (상담실의 위상 및 업무)

1항 (위상)

성폭력 상담실은 학교내의 어느 기구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상을 가진다.

2항 (업무)

- ①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②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 ③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를 하는 일
- ④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는 일
-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 8조 (징계위원회)

1항 (징계위원회 구성)

- ① 징계위원회는 사건접수일로부터 *일내에 구성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교수, 학생, 교직원, 성폭력 상담소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각 대표의 인원과

성별은 동수의 비율로 구성한다.

- ③ 임기는 *년으로 한다.

2항 (징계위원회 역할)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② 피해자 보상과 치료는 제 11조 1-문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 ③ 가해자 징계회부 및 재교육
- ④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

3항 (징계위원회 운영)

- ① 본회의 진행은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며 회의 진행은 학생측 참가인 중 1인으로 한다. 단, 불참시에는 불참사유를 운영위원회 소집전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정족수 미달로 결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다시 소집한다.
- ② 본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며 소수의 의견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 (징계위원회 위상)

징계위원회는 학내 구성원의 동등한 참여로 구성되며 학교본부와 독립적인 위치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신고와 신고기구) 제 5조에서 명시된 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기타 학생생활연구소 여학생부, 지도교수, 학과(부)장, 대학장, 대학총장,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대표기구, 학내 여성관련 단체, 성폭력관련 상담소(외부단체) 등에 들어온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최종적으로 상담실에 신고되어야 한다.

제 10조 (적용시한) 적용시한은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본 학칙의 대상에 포함될 시에는 시한제한없이 적용된다.

제 11조 (징계내용) 일차적으로 징계수위는 징계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에 따른다.

- ①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듣는 재교육
 -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하여 자보, 언론 등을 통해 공개사과
 - ⓓ 금전적 피해보상
 - ⓔ -1) 학생 : 퇴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균신등
-2) 교수, 교직원 : 해임, 직위해제, 정직, 전직, 감봉 등
 - 3) 외부인 : 징계위원회는 가해자가 속한 구성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징계를 요구한다.
- ④ 경고장 발송
 - 경고장은 공개하며 경고장 발송 이후에도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징계수위를 높인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환경형 성폭력, 농담을 가장한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 남성의 성적인 대상물로 여성을 사고하는 것이 잠대되어 있는 발언이나 행위, 옷차림·신체·성적활동에 대한 지나친 언급, 여성배제적인 불쾌한 성적 농담,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별 정체성에 의한 여성의 가치에 대한 폄하적인 발언, 성기중심적인 공개적 행사, 음란물을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와 같은 것들.

⑤ 기타

- ②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⑦ 보복, 부인, 불이행시

⑧ 재범일 경우

제 12조 (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때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제 11조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동아대 성폭력관련 학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 등을 늘어 놓는 것
2. 음란 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3.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그림을 보내는 것
4. 술좌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5.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6. 손이나 몸으로 상대의 신체에 음란한 접촉을 하는 것
7.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 추행하는 것
8.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9.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나 특전을 빌미로 강제 추행하는 것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시간강사, 촉탁직을 포함한다)과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 4조 (피해자의 보호)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②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2장 징계

제 5조 (교원의 징계) 교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교원 징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해제,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

제 6조 (직원의 징계) 직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동아학숙 직원 징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해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

제 7조 (학생의 징계) 학생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학칙 제 58조의 규정에 따라 제

적,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를 한다.

제 8조 (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때는 제 5조 내지 제 7조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9조 (징계결과의 공고) 학교는 제 5조 내지 제 7조에 의한 징계결과를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성폭력 상담실

제 10조 (상담실 설치) 학교는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실장은 상담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해당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11조 (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를 하는 일
4.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 하는 일

제 12조 (운영위원회 등)

- ①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직원 3명, 학생 3명, 상담실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실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상담실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조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대 학생회칙』
제정과 관련하여 사회대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사회대 학부 재학생 전체

4월 4(화) ~ 4월 15(수)

사회대 곳곳, 중앙 도서관, 후생관

총투표에 꼭 참여합시다!

사회대 학생회칙은 사회대 학부생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회대 학생회'의 자치 규약입니다. 사회대 학생회칙은 제·개정의 주체가 사회대 학생들이며 발의권과 의결권을 온전히 사회대 학생 모두가 갖는 우리들의 자치규약입니다. '성폭력 학생회칙의 제정'은 이 사회의 성모순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학내 성폭력의 해결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규약입니다.

이번 총 투표는 사회대 학생회칙의 제정을 위한 것이므로,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등록한 사회대 학부생 전체가 발의권자, 유권자가 됩니다. 4월 14일 15일 양일간 사회대 곳곳, 후생관과 중앙도서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학생증을 제시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왜곡된 사회에서 성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과 개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학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 그럼으로써 행동하지 않는 것은 끝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폭력을 넘의 삶의 민주주의를 위해, 언제나 행동해 온 대학의 정신으로 이제 사회대 학우들로부터 함께 해 나가려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부터, 바로 우리 주변으로부터, 모든 이가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일구어 냅시다.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

일상의 폭력을 넘어 삶의 민/주/주/의/로

-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대 특별 학생회칙 최종안

진보의 요람

제16회 사회대 학생회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대 학생회칙 제정 -2차 수정된 최종안

(조안에서 변경된 부분은 2조와 7조, 8조입니다)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자치적으로 성폭력을 방지하고 규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라 함은 남녀 공히, 한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과 관련하여 문화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물리적,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포함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구 및 한 성을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근거

- ①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행위이거나 발언일 때
- ②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발언일 때
- ③ 동의치 않은 성적 행동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개인의 학업, 생활 및 다른 공적인 일에 대한 참여의 조건에 영향을 끼칠 때
- 또는 환경형 성폭력일 때. 즉,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이 개인의 능력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는 또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학업, 생활, 활동 분위기를 조성할 때, 차별적 행동의 빈도와 정도, 공격적인 언동 또는 공적인 일의 수행에 대한 불합리한 참견들로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하여 상처를 줄 때.

제 3조(대상) 사회대 학생회 구성원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가해자, 피해자 쌍방이 해당될 경우는 물론 어느 일방이 해당될 경우도 포함한다.

제 4조(피해자의 보호)

1. 피해자의 보호가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신고 접수시부터 사건의 조사 및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조사-징계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3.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동의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피해자는 자신이 속한 과 혹은 동아리학생회 안에서 조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제 5조(신고인)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 본인 이외에도 그런 장면을 목격

한 주변인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공감할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6조(신고 방법과 신고기구) 신고자는 본인 스스로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서면이나 직접방문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과학생회, 동아리 학생회, 단대 학생회 및 학내 여성관련 단체에 신고한다. 1차 신고접수자는 반드시 조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7조

1항 (조사-징계위원회 구성) 사건 당사자 쌍방이 속한 과학생회 혹은 동아리 구성원과 단대 학생회 담당자 및 단대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인사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2항 (조사-징계위원회의 역할)

1. 제 2조에 입각하여 신고 접수된 사안의 성폭력 해당여부 판단
2.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3. 피해자 일방만이 사회대 학생회 구성원일 경우, 가해자가 속한 단위와 협의, 중재에 있어 피해자 대리
4. 가해자 징계 회부 및 재교육
5. 피해자 보호
6. 사건 공개 결정전 신고된 사안과 피의자에 대한 보안 유지

제 8조(징계과정 및 내용) 조사-징계 위원회의 사건 심의 결과,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징계에 임한다.

1항 (경고장 발송) 조사-징계위원회의 판단으로 경미한 사안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징계를 유예할 수 있다. 1차 경고장 발송 후 동 기해자에 의하여 사건이 재발될 시 부가하여 징계에 임한다.

2항 (사건 공개 및 공개 사과문 게시) 징계에 임할 때 사건은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과 함께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해자 측이 사과문 게시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3항 (징계사항) 조사-징계위원회는 판단에 따라 다음의 예를 포함한 징계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징계사항의 예-

1.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듣거나 책을 읽는 재교육의 방법
2. 조사-징계위원회가 지정하는 여성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하는 방법
3.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방법

제 9조(단대 내 성폭력 담당 기구의 설치) 사회대 학생회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학생회 내 이의 책임자를 둔다.

사회대 학생회 출범식 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

성폭력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회적 폭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 퍼포먼스의 처음은 그렇게 시작한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무대 위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행복한 모습인 듯 보인다. 그러나, 자신들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다소와 주로는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여기에 깨어들지 못한 소수와 베주로가 생겨난다. 그들은 처음엔 자신들이 소외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로문화에 동참하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몇 년의 시도 끝에 좌절하게 된다. 주로사회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소수를 알아내고 –이기의 긴 치으로 표현되었다. – 그 구속에서 결국 그들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구속에서, 소외되고 구속받던 소수가 일어선다. 그들은 자신을 알아내고 있던 구속의 틀을 벗어 던지고, 그들을 구속하던 이들도 함께 이방시킨다. 이제 그들은 함께 나아간다.

한! 걸! 음! 씩!!!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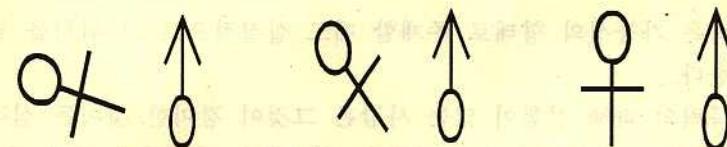
사회대 학생회 출범식
시간 : 4월 9일 오후 1시
장소 : 아고라

우↑ 우↑ 우↑ 우↑ 우↑

4월 14,15일

사회대인 총투표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진보의 요람

제 16 대 사회대 학생회

일상의 폭력을 넘어 삶의 민주주의로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대 특별 학생회칙 제정

성폭력, 그 일상성에 대해

일상의
폭력을
넘어
삶의
민/주/
주/의/로

97년의 대학신문 설문결과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성희롱으로 나누어 성폭력 사례 빈도를 조사하였을 때 '자주'와 '가끔씩'을 합쳐 각각 86.7%, 69.9%, 74.2%로 나타났다. 이외에 강제 애무나 키스는 9.1%, 강간미수는 1.5%였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성폭력의 일상성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뿐이다.

일상의 공간을 좀 더 가고

일상의
폭력을
넘어
삶의
민/주/
주/의/로

폭력은 가능성의 형태로 존재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성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경미한 것인든 심각한 것인든 대개 행동상의 위축을 경험한다. 가해자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제지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반경을 고립시키는 것으로 그런 상황의 반복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나 동아리의 술자리에서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면 피해자는 술자리를 포함으로 불쾌한 상황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직접적 피해자에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로 확산되고 하나의 전체적 관행으로 굳게 될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일상의
폭력을
넘어
삶의
민/주/
주/의/로

이런 행동상의 위축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을 일부에서는 성폭력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웃을 단정하게 입고', '이성과 단둘이 밀폐된 곳에 있어서는 안되고', '항상 상대를 경계해야 하고', '밤늦게 다녀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라고. 그러나 이것은 성폭력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아니다. 웃을 허름하게 입고 다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강도범의 발생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문제는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하는 모든 공간에서 불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다. 그보다 그것에 대해 자신을 공간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말고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고립을 만들어 낸다.

민/주/주/의, 우리의 삶으로부터

일상의
폭력을
넘어
삶의
민/주/
주/의/로

성폭력은 사회적 성모순이 우리를 잠재적 피해자로, 잠재적 가해자로 구조화하는 특정한 형태의 폭력이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러한 폭력이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이 폭력을 방관함으로 이 폭력이 계속되게 내버려둔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돌려져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는 다만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 모든 성원이 누구도 억압하지 않고 누구도 억압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

일상의 폭력을 넘어서려는 학생 자치의 힘으로,
4월 14, 15일, 사회대 모든 학우들의 **총투표**로, 이제 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대 특별 학생회칙’ 제정 천반 투표 결과

발신 : 제 16대 사회대 학생회 여학생 위원회
수신 : 본 사안에 대해 관심있는 모든 이들

◆ 투표 일시 : 4월 14일, 15일 양일간 9시부터 17시까지

◆ 투표 장소 : 중앙 도서관 학생회관 측 입구, 후생관 입구, 16동 라운지, 중앙 현관, 경영대 측 현관, 법대측 현관, 3층 중앙홀, 총 7곳데

◆ 정원수 : 2247표

실투표수 : 1263표 (56.2%)

찬성 : 1038표 (82.18%)

반대 : 144표 (11.40%)

무효 : 81표 (6.41%)

◆ 통과된 성폭력 학생회칙 전문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자치적으로 성폭력을 방지하고 규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라 함은 남녀 공히, 한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과 관련하여 문화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물리적,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원치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구 및 한 성을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성지 자기결정권 침해의 근거

①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행위이거나 발인일 때

②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발인일 때

③ 동의치 않은 성적 행동에 대한 복종 또는 기부가 개인의 학업, 생활 및 다른 공적인 일에 대한 참여의 조건에 영향을 끼칠 때

또는 환경형 성폭력인 때. 즉,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이 개인의 능력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는 또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학업, 생활, 활동 분위기를 조성할 때, 차별적 행동의 빈도와 정도, 공격적인 인동 또는 공적인 일의 수행에 대한 불합리한 참견들로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하여 상처를 주었을 때.

제 3조(대상) 사회대 학생회 구성원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기해자, 피해자 생방이 해당될 경우는 물론 어느 일방이 해당될 경우도 포함한다.

제 4조(피해자의 보호)

1. 피해자의 보호가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신고 접수시부터 사건의 조사 및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조사-장개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3. 성폭력 시기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동의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피해자는 자신이 속한 과 혹은 동아리 학생회 안에서 조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을 지명할수 있다.
제 5조(신고인)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 본인 이외에도 그런 장면을 목격한 주변인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공감할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6조(신고 방법과 신고기구) 신고자는 본인 스스로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서면이나 직접방문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과학생회, 동아리 학생회, 단대 학생회 및 학내 여성관련 단체에 신고한다. 1차 신고 접수자는 반드시 조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7조

1항 (조사-징계위원회 구성) 사건 당시자 쟁방이 속한 과학생회 혹은 동아리 구성원과 단대 학생회 담당자 및 단대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인사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2항 (조사-징계위원회의 역할)

1. 제 2조에 입각하여 신고 접수된 사안의 성폭력 해당여부 판단
2.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3. 피해자 일방만이 사회대 학생회 구성원일 경우, 기해자가 속한 단위와 협의, 중재에 있어 피해자 대리
4. 기해자 청개 회부 및 재교육
5. 피해자 보호

6. 사건 공개 결정전 신고된 사안과 피의지에 대한 보안 유지

제 8조(징계과정 및 내용) 조사-징계 위원회의 사건 심의 결과,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징계에 임한다.

1항 (경고장 발송) 조사-징계위원회의 판단으로 경미한 사인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징계를 유예할 수 있다. 1차 경고장 발송 후 동 기해자에 의하여 사건이 재발될 시 부가하여 징계에 임한다.

2항 (시건 공개 및 공개 사과문 개시) 징계에 임할 때 사건은 기해자의 공개 사과문과 함께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해자 측이 사과문 개시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3항 (징계사항) 조사-징계위원회는 판단에 따라 다음의 예를 포함한 징계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징계사항의 예-

1.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듣거나 책을 읽는 재교육의 방법
2. 조사-징계위원회가 지정하는 여성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하는 방법
3.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방법

제 9조(단대. 내 성폭력 담당 기구의 설치) 사회대 학생회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학생회 내 이의 책임자를 둔다.